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-264호

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2009. 2. 6일자로 조합설립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 2013-82호(2013. 8.16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-40호(2015. 4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,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81, 202번지 일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147-2903)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409-4458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12월 30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4-123번지 일대

나. 면적 : 98,409.4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강신선)
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13 대화빌딩 4층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1년 12월 24일
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)

구분	대지면적 (㎡)	동수	층수	세대수 (세대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용도
당초	98,453.70	아파트17개동 (상가포함)	지하3층, 지상33층	1,945	18.95	274.84	12,949.26	291,270.69	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변경	98,409.40	아파트17개동 (상가포함)	지하3층, 지상33층	1,945	19.60	274.90	13,394.41	296,331.05	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
※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-142호)에 따른 대지 면적 변경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(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-230호)에 따른 건축물 면적 변경

나. 분양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▷ 공동주택(변경없음)

▷ 근린생활시설(변경)

분양계획(당초)			분양계획(변경)		
공급 대상	건축연면적	호수	공급 대상	건축연면적	호수
계	5,500.55	52	계	5,535.44	53
조합원	5,500.55	23	조합원	5,535.44	53
일반분양		29	일반분양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등(변경)

▷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42호)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등(변경없음)

▷ 2015년9월 이후 끝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-2호

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· 고시

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, 제3항, 제7항의
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
합니다.

2021년 1월 1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건 명 :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2. 결정항목

가. 차 량

- ①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
- ② 잔가율 하향

나. 차량, 기계장비, 시설, 회원권 조사물건 수 증가

3. 세부결정사항

송파구 세무행정과 · 세무1과 · 세무2과에 비치하고 있는 물건별 시가

표준액표와 같음

4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